
KB캐피탈과의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인한 세금 안내

(내국법인용·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포함)

※본 내용은 기존 KB금융지주의 주주님과는 무관하며 당사와 KB캐피탈과의 주식교환을 통해 새로 KB금융지주의 주주가 되실 분들에게만 해당됩니다.

I. 포괄적 주식교환에 응하는 경우

1.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 (1) KB캐피탈 주식과 KB금융지주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함.
- (2)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산정. 양도가액은 수령하는 KB금융지주 주식의 1주당 주식교환일의 종가임.
- (3) 양도차익이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11% ~ 24.2% (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됨.
- (4) 본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법인세 과세표준을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 시 본건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함.

2. 주식양도가액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

- (1) KB캐피탈 주식과 KB금융지주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는 양도가액의 0.5%의 세율로 증권거래세가 부과됨. 주당 양도가액이란 한국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을 의미함.
- (2)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탁한

금융투자업자가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함.

- (3) 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017년 11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함.

II. 유의사항

1. 구체적인 과세관계는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길 바람.
2. 주주님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관련 사항에 대한 상담 및 안내를 진행할 예정인바, 세무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02)3475-3745(KB 캐피탈 재무기획부)로 문의 바람.